

장애인복지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간접적 소득보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분야는 소득, 의료, 교육, 고용,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소요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만 해도 2000년에 1476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 예산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그 자원은 욕구가 더 큰 대상자에게 더 많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형평, 공평, 그리고 적절성이 있다.¹⁾ 형평(equality)에는 수적 형평(numerical equality)과 비율적 형평(proportional equality)이 있는데, 수적 형평은 모든 사람들에게



李 善 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며, 비율적 형평은 유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처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형평은 수적 형평을 의미하며, 비율적 형평은 공평(equity)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 형평은 자원과 기회의 분배를 평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의 시장 제도로 발생한 부의 불균형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한다. 장애인복지정책도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 혜택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공평(equity)은 공평한 처우를 의미하며, 사람들의 가치는 사회에 대한 기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기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게 된다. 적절성(adequacy)은 적절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 또는 기여에 따른 분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형평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중에서도 소득보장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 있다. 전자에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생활보호제도(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 장애수당 등이 있고, 후자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현물로 지원하는 지출, 정부가 직접 예산으로 지출하지는 않지만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간접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 지출(tax expenditure)이 있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형평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 모두 어떤 소득계층에 유리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부의 간접적 지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형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접적 소득보장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에 장애인을 위한 연금은 장애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

1) Neil Gilbert &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998.

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서 장애등급 1~3급까지 기본연금액의 60~100%와 가급연금액이며, 장애등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연금액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기본연금액} = 1.8 \times (A+B) \times (1+0.05n)$$

- A :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999년 1,271,595원)
- B :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 n : 20년 초과 연수

위의 식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자 개인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높은 연금을 받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인해서 연금이 올라가게 되어 일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반면에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장애 2급 이상), 60세 이상의 부모(또는 장애 2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배우자에게는 연 161,250원, 자녀와 부모에게는 1인당 연 108,360원의 일정액이 지급된다. 따라서 가급연금액은 소득에 전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서 연금보험료(지역)와 장애 1급이 받는 장애연금을 비교해 보면, 표준소득월액이 가장 낮은 1등급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6,600원이며, 받게 되는 연금은 22만원으로 연금보험료의 33.3배이다. 10등급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11,100

장애인복지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 혜택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

원이며, 연금은 268,810원으로 연금보험료의 24.2배, 20등급의 경우 13.4배, 30등급의 경우 9.3배, 40등급의 경우 7.5배,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경우 7.0 배를 받게 되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연금과 연금보험료의 절대적인 액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1등급이 213,400원, 10등급이 257,710원, 20등급이 315,310원, 30등급이 412,510원, 40등급이 549,310원, 45등급이 645,310원으로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지만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라 형평성이 일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직업을 갖고 보험료를 지불한 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연령 이전부터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에게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소득이 높은 취업장애인과 소득이 낮은 비취업장애인의 격차를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2)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을 치유한 후 장애가 남아 있으며 그 정도가 산재에 의한 장애등급 1~3급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등급 4~7급인 경우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8~1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장애보상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분(90.1%)에서 장애7급인 경우 138일분(37.8%)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보상일시금도 장애4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1,012일분에서 장애14급인 경우 55일분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

장애급여는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으면 장애급여도 높게 책정되어 소득계층에 따라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득계층이 높으면 장애급여도 높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취업장애인보다는 취업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비취업장애인은 산재보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생계보호급여

2000년 현재 생활보호법상의 생계보호급여는 거택보호의 경우 가구당 재산 2900만원 이하,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1인당 월평균

약 18만 8천원이 지급되며, 시설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인당 월평균 약 14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1998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117.5만명이며, 거택보호대상자는 30.1만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25.6%, 자활보호대상자는 79.8만명으로 67.9%, 시설보호대상자는 7.6만명으로 6.5%이다.

1998년말 현재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총 11.7만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추정장애인(1995년 105만 3천명)의 11.1%에 불과하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급여는 장애등급 1~4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생계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은 5.7만명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중에서 약 51.3%의 생활보호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생계보호급여는 가구재산 2900만원 이하,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소득계층이 낮은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누수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생계보호급여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그나마 형평성을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장애수당

생활보호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1, 2급의 중증장애인(정신지체는 3급 포함)에 대해 장애수당으로 월 4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0년에 76,899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는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11.7만명의 6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설보호 장애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수당도 현재로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계보호급여처럼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고 있어서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직업을 갖고 보험료를 지불한 장애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취업장애인과 소득이 낮은 비취업장애인의 격차를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간접적 소득보장

1) 의료비 지원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50%(1999년 기준 1,500원 중 750원), 2·3차 진료기관과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예정인 금액은 69억 5000만원이며, 지원인원은 93,251명으로,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은 74,530원이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선정하는 가구재산 및 월소득의 기준은 거택보호대상 장애인과 동일하며, 저소득층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교육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가구²⁾의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 가구주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지원할 인원은 6,894명이며, 배정된 예산은 30억 5400만원으로 1인당 지원비는 442,990원이다.

현재의 자녀교육비 지원은 재산과 월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상당수 장애인가구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3) 자립자금 대여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업자금 융자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에게 가구당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7%의 이자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소득은 가구당 재산이

2) 2000년 현재 저소득가구는 가구당 재산액이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8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60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2000년에 정부가 자립자금 대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가구는 1,500가구이며, 180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어 있다.

자립자금의 대여는 비교적 다른 지원에 비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의 대출금리를 약 연 10%로 보면,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각 가구가 받게 되는 연평균 혜택은 1200만원을 융자받았을 때 약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자립자금 대여는 정부의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후에 자립자금을 대여 받은 장애인이 대출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4) 장애인보장구 교부

등록한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취업 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장애인(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동일)에게 의수족·보조기의 제조,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9,700건에 4억 5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1인당 평균 지원액은 47,110원이다. 장애인 보장구의 교부 대상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으로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각종 세금 감면

세금감면은 정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지출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로서 조세 지출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과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 관세를 전액 면세한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과 같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선정하는 가구재산 및 월소득의 기준은 거택보호대상 장애인과 동일하며, 저소득층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 의료비 지원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보장구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간접세의 감면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분명하지 않으나 세금을 면제받는 용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자동차 관련 세금이다. 자동차 세금은 구입단계, 등록단계, 보유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구입단계의 자동차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있다. 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운전을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는 1,500cc 미만의 승용자가용은 공장도 가격의 7%, 2,000cc 미만의 승용자가용은 공장도 가격의 10.5%이다. 따라서 1,500cc인 7백만원 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49만원이 특별소비세이며, 2,000cc인 1400만원 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147만원이 특별소비세이다.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이기 때문에 1,500cc의 교육세는 147,000원, 2,000cc의 교육세는 441,000원이다.

등록단계의 자동차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도시철도공채(준조세에 해당한다)가 있다.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고, 지역개발공채와 도시철도채권의 구입도 면제받는다. 우선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의 2%로, 위에서 예로 제시한 1,500cc의 경우 152,700원, 2,000cc의 경우는 318,200원이다. 등록세는 판매가격의 5%로 1,500cc는 381,850원, 2,000cc는 795,500원이다. 또,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 공채매입액은 1,500cc는 9%(지하철 지역)인 687,330원, 2,000cc는 12%(지하철 지역)인 1,909,200원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해당 장애인은 1,500cc를 구입하는 경우 1,858,880원, 2,000cc를 구입하는 경우 4,933,900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만약, 5년에 1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된다면 매년 평균 약 37,000원(1,500cc), 986,700원(2,000cc)를 면제받게 된다.

또 승용차 보유단계의 세금에는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과세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기준은 1,500cc 이하가 140원, 2,000cc 이하가 220원이다. 따라서 1,500cc는 연 210,000원, 2,000cc는 연 400,000원이다. 면허세는 1,500cc가 27,000원(인구 50만 이상 시), 2,000cc가 36,000원(인구 50만 이상 시)이다. 따라서 승용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장애인은 매년 1,500cc는 237,000원, 2,000cc는 436,000원을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이

면제받는 관련 세금은 매년 274,000원(1,500cc), 1,422,700원(2,000cc)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자동차보유가구비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엄격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자동차보유가구비율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체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소득은 조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체 가구의 자동차보유가구비율은 54.87%로 근로자 가구의 58.9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평균소득도 약간 낮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동차보유가구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분위 계층의 자동차보유가구비율은 22.23%에 불과한 반면, 10분위 계층의 자동차보유가구비율은 84.17%로 거의 4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소득계층별 보유자동차의 유형은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유형의 자동차(2,000cc)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 10분위별 자동차 관련세금 면세의 기대값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연간 세금감면 기대값은 316,000원인 데 비해 10분위 계층의 기대값은 1,197,000원으로 약 3.8배에 달하고 있어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세금감면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소득세에 대해 인적 공제를 해주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공제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는 면제해 준다.

이와 같은 면세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며,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면세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상속세, 소득세, 증여세 등도 세금을 내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의 경우 소득 1분위 계층의 연간 세금감면 기대값은 316,000원인 데 비해 10분위 계층의 기대값은 1,197,000원으로 약 3.8배에 달하고 있어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세금감면의 혜택이 커진다.

표 1.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소득과 자동차보유가구비율

(단위: 원, 명, %)

소득 분위	가구 소득	가구당 인원수	1인당 소득	자동차 보유 가구비율	세금감면 기대값	연료비 세금감면 기대값
1분위	641,791	3.05	210,423	22.23	316,000	233,000
2분위	1,079,600	3.21	336,324	37.42	532,000	393,000
3분위	1,344,747	3.39	396,681	45.78	651,000	481,000
4분위	1,593,829	3.52	452,792	53.52	761,000	562,000
5분위	1,837,967	3.57	514,837	59.93	853,000	629,000
6분위	2,126,080	3.54	600,588	65.30	929,000	686,000
7분위	2,443,559	3.84	636,343	68.52	975,000	719,000
8분위	2,849,729	3.78	753,897	73.75	1,049,000	774,000
9분위	3,460,490	3.92	882,778	78.34	1,115,000	823,000
10분위	6,109,273	3.93	1,554,522	84.17	1,197,000	884,000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000, 1/4분기에서 재구성.

금을 낼 가능성이 적은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세금의 감면은 소득계층별 형평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 교통 관련 시책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처럼 정부의 조세 지출을 유도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장애인복지정책에는 교통관련시책이 있다.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이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이 크며, 비교적 소득계층별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시책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LPG 가스 충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LPG가스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000년 7월 현재 휘발유의 값은 1ℓ에 1,279원으로, LPG의 값인 1ℓ 337원의 3.8배에 이른다. 휘발유와 LPG의 가격 차이는 주로 세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승용차 1대당 휘발유 사용에 따른 세금은 112만원이었으며, 휘발유 1ℓ당 세금은 870원으로 소비자가격의 70%

정도로 추정되었다(한국경제, 2000년 6월 6일자). 평균적으로 차 1대당 사용한 휘발유는 약 1,290ℓ였다.

한편, LPG의 1ℓ당 세금은 소비자가격의 16% 정도로 약 54원으로 추정된다.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도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동일한 양의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자동차 연료비로 부담하는 세금은 약 70,000원으로 1/16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세금으로 105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표 1>에 다시 적용하게 되면, 1분위 소득계층은 매년 233,000원을, 10분위 소득계층은 매년 884,000원을 자동차 연료비의 세금에서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대형자동차가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더 많이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고소득계층이 받게 되는 연료비를 통한 세금 혜택은 표에서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승용자동차뿐 아니라 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해 철도(새마을호 제외) 운임의 50%, 지하철·전철의 100%, 국내선 항공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항공요금만 순수 민간기업일 뿐이며, 철도·지하철·전철은 모두 공공기업으로 일정 부분 정부의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요금의 할인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으며 더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에 1~3급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이 자유롭고, 철도와 항공의 경우 50%의 운임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7) 각종 요금 할인

이 외에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간접적 소득보장에는 전화 1대에 대해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월 3만원 이내)를 50% 할인, 114 안내요금의 면제가 있다. 또한 장애

교통요금의 할인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으며, 더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30% 할인, 일반 PC통신의 기본 이용요금과 정액형 인터넷요금의 50% 할인,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의 TV 수신료 면제, 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 등의 요금 면제 등이 있다. 이러한 요금 할인과 면제는 모두 소득계층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어서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언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을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나누었을 때 직접적 소득보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생계보호급여, 장애수당은 모두 소득계층별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적 소득보장에서는 현물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 감면,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은 소득계층별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금 감면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 예산 지출이 직접적 예산 지출보다 운영하기 쉽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적 예산 지출은 수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 예산 지출을 줄이고 직접적 예산 지출을 늘림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복지